

# “모두를 위한 인터넷, 모두의 거버넌스” -사물인터넷 거버넌스: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정책<sup>1)</sup>

(2016. 9. 23. 금. 한국소비자원 김인숙 책임연구원)

## 1. 들어가며

- IoT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은 소비자 수용·확대가 선결되어야함.
    - 이는 IoT 제품 및 서비스가 갖는 제품 안전이나 보안 차원에서의 잠재적 사고 위험성, 새로운 형식의 거래 위험성에 대한 소비자불안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음.
    - 현재 IoT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논의와 시책이 세부 분야별로 활발히 진행중\*이나, 아직 소비자 측면에서는 미비하다고봄.
- \* 예컨대 미래창조과학부의 “사물인터넷(IoT) 정보보호 로드맵 3개년 시행계획, 2015.6

## 2. 프라이버시 보호

- 사업자 자율의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
    - (필요성) 사물인터넷 제품·서비스의 생산·제공 단계에서부터 사업자가 이용 소비자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 필요
    - (현황) 최근 네이버에서 모바일 앱 개발자가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‘모바일 앱 개발 프라이버시 보호 수칙’ 발표\*
      - \* 모바일 앱 기획단계에서부터 ‘Privacy by Design’ 철학을 적용해 ▲투명한 개인정보의 처리 ▲최소 개인정보의 수집 ▲이용자 통제권 보장 ▲보안조치 적용 ▲프라이버시 보호 및 보정 등을 서비스 핵심 요소로 제공하는 원칙을 가지고 제시. 연합뉴스 2015. 5.22
    - (방안) IoT 제품·서비스 분야별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주도의 사업자 자율의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\*
- \*<참고>미국 FTC IoT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업 권고 사항 : 제품 디자인 단계에서부터

1) 본고는 이득연, ‘신유행 서비스 소비자 문제연구(1)-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-’, 한국소비자원(2016) 보고서 내용에서 발췌함.

- ▲프라이버시와 보안 위험평가 ▲데이터 수집 및 사용 최소화 ▲제품 출시전 보안 수단 사전 테스트 ▲직원들에 대한 보안교육 ▲합리적 보안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보안서비스 확보
- ▲시스템내 보안위험이 확인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심층방어시스템 구축 ▲소비자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에 대한 공인되지 않은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접근 통제 수단 구축
- ▲제품 전생애주기에 걸친 모니터링 등을 고려

## 3. 보안정책

- IoT 관련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인증제 도입
  - (필요성) IoT 제품 및 서비스의 보안 위험에 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에 대한 간편 식별 정보 제공 필요
  - (현황) 각 분야별로 정부 각 부처에서 현재 운용중인 시험·평가·인증 제도에 IoT 보안항목 및 기준 반영을 검토중, 예를 들면 스마트홈 분야의 경우 ‘지능형 건축물 인증’에 보안인증 항목 신설 등
  - (방안) 중장기적으로 IoT 제품 및 서비스의 보안성에 대한 별도의 보안인증제 도입 검토
- IoT 제품 및 서비스 이용시 소비자 보안수칙 개발 보급
  - (필요성) 소비자의 조작 미숙이나 보안의식 결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험에 대해 IoT 제품/서비스의 이용시 소비자들이 준수해야 할 보안수칙을 개발·보급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.
  - (현황) 일부 제품에 대해 소비자 보안수칙들이 제작·보급되고 있음. - 공유기 이용수칙(미래부·한국인터넷진흥원, 2015.3) 등
  - (방안) 주요 분야별 IoT 제품/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가 지켜야 할 보안수칙을 개발·보급

## 4. 나가며

- 향후 IoT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IoT가 제품·서비스가 갖는 제품 안전이나 보안 차원에서의 잠재적 사고 위험성에 대한 소비자불안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음.